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47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박용갑 · 박희승 · 염태영
권칠승 · 윤준병 · 이병진
황명선 · 소병훈 · 조인철
정준호 · 한준호 · 이연희
서삼석 · 장종태 · 장철민
손명수 · 박상혁 · 문진석
의원(18인)

제안이유

2024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으며,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과 권한,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등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6조제1항).

나.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안전에 관한 자문, 연구개발사업 범위에 지하안전 장비를 추가하고,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형식승인·검정제도 도입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제11조제3호, 제13조제1항,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35조제5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및 제25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등).

바. 유출지하수등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및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사.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46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하안전관리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교육”을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을 “기술·장비”로, “개발”을 “개발 및 품질관리”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기술”을 “기술·장비”로, “개발”을 “개발 및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둘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기술”을 “기술·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술”을 “기술·장비”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형식승인 등) ① 지하안전관리
에 필요한 측정기기·장비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 및 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
는 자는 해당 측정기기 및 장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
6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
기·장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장비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장비를 지하안전관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장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측정기기·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장비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측정기기·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⑥ 형식승인·변경승인·형식승인 취소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는 것

3. 측정기기·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에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3항에 따른 지정·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절차 및 출입·조사,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검정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 및 장비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장비(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에게 지하

안전관리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장비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장비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측정기기·장비를 제공받아 지하안전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장비의 검정유효기간은 측정기기·장비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측정기기·장비와 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측정기기·장비를 지하안전관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측정기기·장비와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측정기기·장비에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장비의 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4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4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를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및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유출지하수 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활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하안전관리 강화와 지하안전평가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지하안전평가등의 인건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주변 지반”을 “주변 지반, 지하수의 수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 1회 이상”을 “분기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검토하여”를 “검토하고,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소속 직원과”를 “소속 직원 및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지역 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고시하여야 한다”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유출지하수 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제3항 중 “발생한”을 “발생한 경우”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을 “제3항에 따

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결과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하며,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

2의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해제·고시,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정비계획 등

2의4.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권고·건의·조치 결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3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 확보를 위하 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지 하안전관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하 안전관리관련기관”이라 한다) 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 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 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 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 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 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③ ~ ⑥ (생략)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 2. (생략)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4. -----
-- 기술·장비 ----- 개발 및 품질관리-----

5.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 기술·장비 -----
----- 개발 및 품질관리-----

<신 설>

1. ~ 2. (생 략)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3의2.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 및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 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

-----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장비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

-- 기술·장비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지하안전 측정기기·

장비의 형식승인 등) ① 지하
안전관리에 필요한 측정기기·
장비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
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측정기기 및 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
당 측정기기 및 장비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
정기기·장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장비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
경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장비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장비를 지하안전관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장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측정기기·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장비의 제작 또는 수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

<신 설>

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측정기기·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⑥ 형식승인·변경승인·형식승인 취소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
을 갖출 것

3. 측정기기·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
립성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
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
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
인대행기관에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3항에 따른 지정·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절차 및 출입·조사,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지하안전 측정기기·

<신 설>

장비의 검정 등) ①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 및
장비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
(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
(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장비(제13조의
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에게 지하안전관리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
로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
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
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장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측정기기·장비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장
비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

로부터 측정기기·장비를 제공 받아 지하안전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장비의 검정유효기간은 측정기기·장비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측정기기·장비와 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측정기기·장비를 지하안전관리에

<신 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검정
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측
정기기·장비와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측정기기
·장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
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
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
기·장비의 검정기준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지하안전 측정기기·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4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를 검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
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4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u>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u> <u>4.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u> <u>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u>⑧ 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21조(협약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① ~ ② (생략)	제21조(협약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③ -----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소속 공무원 및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

-----.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

② ~ ③ (생략)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 ③ (생략)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
지사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
하시설물관리자의 제2항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 국토교통부장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③ -----

----- 국토교통부장관-----.

④ (현행과 같음)

⑤ -----

-- 국토교통부장관-----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

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② (생 략)

제32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 ② (생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

---- 준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

-----.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략)

③ 시·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생략)
<신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하안전관리 강화와 지하안전평가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지하안전평가등의 인건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 주변 지반, 지하수의 수량-----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
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
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
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
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
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
수·구청장-----
-----.

② -----

----- 분기마다

-----.
----- 검토하고,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 지반침하 중점관리 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 대상”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 소속 직원 및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지역 주민-----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유출지하수 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발생한 경우 -----
-----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
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를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④ -----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지방지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 결과를 -----
-----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 및 지방지하사고조

⑦ (생 략)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u>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하며, 조치 결과를 국토 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 안전평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 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u> <u>2의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 관리대상 지정·변경·해제· 고시,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안전확보, 제40조제1항 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정비계 획 등</u> <u>2의4.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권고·건의·조치 결 과</u> 3. ~ 8.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